



법과 종교의 분리¹⁾

법과 종교윤리는 서양 법제사 안에서 실로 오랜 세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긴장 안에서 '디딤돌'이면서 동시에 '걸림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법과 종교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데, 법학이 사고와 가치관이라는 실타래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가는 도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이명박 정부 때 이슬람 채권에 대하여 세계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우리 정치권 안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이슬람 채권법', 소위 '수쿠크(Sukuk)법' 처리를 놓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인사들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개신교계 차원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정치적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압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슬람 채권법이 강행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모 유명 원로 목사의 발언까지 이어져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슬람 채권법 도입에 대한 개신교계의 일련의 반향을 두고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종교가 이익집단화 되어간다거나 혹은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법제사를 통해 종교와 법이 어떻게 분리되어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법이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법과 정치권력이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종교의 분리 또는 종교로부터 법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여정은 그리스도교로 표방되는 서구 유럽의 세속주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결실이 오늘날 우리가 천부의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서양 법제사 안에서 법과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신에 입각한 현대세계의 세속주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 법률 개념입니다.

- 1) 본 원고는 2011년 서강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과 기업연구」 제1권 제2호 203~224쪽에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의 투쟁 - 서양 법제사 안에서 법과 종교의 분리"라는 이름으로 투고한 내용이다. 이를 2018년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법으로 읽는 유럽사」 42-51쪽에 인용을 밝히고 수정 정리한 원고이다. 이를 다시 한국법제연구원 「법연」의 동의를 받아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 2) '교회법'이라는 용어는 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규칙kanónes'와 '법률nómoi'을 구분했고, 그러한 규범들은 다소 시민법적 성격을 의미했다. 공의회들은 신앙규범canones fidei, 도덕규범canones morum, 규율규범canones disciplinares을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규율규범은 강제력보다 권고적 성격이 강했다(G. Ghirlanda, Diritto canonico,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350).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법은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1140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학과 비교해 독립 학문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학의 원천이 곧 교회법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교회법은 신학의 예속학문 점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라시아노 법령집에서 트리엔트 공의회에 이르러 교회법은 신학의 틀을 벗어나 비로소 독립 학문으로 윤곽을 드러내며 자리잡기 시작한다. Wernz-Vidal; Conte a Coronata; Biat; Naz; Cappello; Vermeersch; Creusen; Regatillo; Michiels; Van Hove; Maroto. 교회법학 연구와 방법론을 위해서는 1931년 5월 24일자 비오 11세의 헌장 「지혜의 주 하느님Deus scientiarum Dominus」를 상기하여야 한다. 사도좌 관보 23(1931), 241 ss 참조.
- 3) Mattei, Il problema della codificazione civile europea e la cultura giuridica. Pregiudizi, strategie e sviluppi, in Cel/Europa, 1998, p. 207. Bergman, Law and Revolution, Cambridge, 1983, p. 7.
- 4) 법철학의 이러한 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적을 참조하라. Ripert, La règle morale dans les obligations civiles, Paris 1925; Goodhart, English law and the Moral law, London, 1953; Tunc, Tort law and Moral law, in Camb. L. J., 1973, p. 52; Tunc, Hamson, Tort law and Moral law, in Camb. L. J., 1973, p. 241; Fuller, La moralità del diritto, Milano, 1986; Cattaneo, Persona e stato di diritto, Torino, 1994.



이탈리아 대법원 카사지오네

I. 서구 법 전통에서 '법'에 대한 어원적 고찰

서양 법제사 안에서 교회와 정치의 상호 작용은 법조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로마의 정신이 그리스도교 사상에 수용되고, 그 사상이 역으로 서양 법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서구 법 전통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의 규율,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ius canonicum*'²⁾에서 독립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법이 형성되었다는 점이지요.³⁾ 이러한 주제는 일반적으로 법철학의 고전적 논제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 법이란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종교나 윤리의 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⁴⁾ 물론 오늘날

우리는 법의 주제와 종교와 윤리의 주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서양 법제사 안에서 이러한 인식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사회는 법과 종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디다. 이러한 현상은 굳이 오래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의 이슬람법이나 히브리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법 전통에서 종교와 법의 관계를 논하기





테베레 강에서 바라보는 바티칸

위해서는 우선 로마법에서 ‘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 ‘유스*ius*’에 대해 어원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 ‘*ius*’를 어원적으로 볼 때, 그리스의 신 가운데 하나인 ‘제우스 파테르*zeus pater*’를 라틴어 ‘유피테르 파테르*iuppiter pater*’로 옮긴 것이고, 이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야우스 피타르*yaus pitar*’에서 유래한 것입니다.⁵⁾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라틴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걸까요? 역사적으로 상고시대에 인도와 유럽 지역은 유라시아의 스텝지역에서 유입해온 유목민족에 의해 정복당했는데, 유목민족의 대대적인 이주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은 동시에 종교, 법률, 언어적인 측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구 사회의 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 어원적 기원은 종교에 기초하고 있고, 그 원천은 우리가 흔히 사어라고 생각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상고시대의 대대적인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 라틴어*Lingua latina*도 세계 언어 분포상 인도유럽어계*Linguae Indo-europeae*에 속하게 됩니다. 인도유럽어란 북인도,

근동, 유럽 전 지역에 전파되어 있는 언어군을 가리키는데, 18~19세기 역사 비교언어학에 의해서 그 모든 언어들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구조에 있어서도 단일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으리라는 가정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산스크리트어, 히타이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고대 게르만어 등을 비교 연구하여 상고 인도유럽어를 어휘별로 복원하는데 성공하여 사전을 만들어냈을 정도고요.⁶⁾ 물론 유럽어의 모체가 ‘인도유럽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의 유럽인들이 탐탁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지요 *Factum est factum*.

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어는 권리를 표현할 때 주체에 따라 달리 표현합니다. ‘파스*fas*’는 종교에 기반을 둔 권리나 책임을 의미하는데, ‘파스 에스트*fas est*’는 우리말로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가파하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명령과 권리에 의한 정당성과 구별되는 ‘신적 명령에 의한 합법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간의 명령과 권리에 의한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해서는 ‘유스 에스트*ius est*: 정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⁷⁾ 또한 고전기법학자는 신법*ius divinum*과 인법*ius humanum*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법학이란 신사神事와 인사人事의 지식이며, 옳고 그름의 학문이다*lurisprudentia est divinarum atque humanarum rerum notitia, iusti atque iniusti scientia*”⁸⁾ 라고 정의합니다.

II.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 종교와 법의 분리

법과 종교윤리는 서양 법제사 안에서 실로 오랜 세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긴장 안에서 ‘디딤돌(라. *petrus*)’이면서 동시에 ‘걸림돌(라. *scandalum*)’의 역할을 해왔지요.

5) P. Gallo, *Introduzione al diritto comparato*, vol. I, Torino: G. Giappichelli Editore, 2001, p. 52.

6) 성염, 「고전라틴어」, 바오로딸, 2003, 3쪽.

7) R. T. Kennedy, *Book V The temporal goods of the church*(cc. 1254~1310), in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New York: Paulist, 2000, p. 1487.

8) *Intst.* 1, 1, 1; Cf. *Ulpianus*, *D.* 1, 1, 10, 2.

실상 고대 씨족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양상을 띠었으며, 이 사회의 씨족장은 정치적 수장이자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법제사 안에서 법과 종교가 분리되는 첫 단계는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단계인 기원전 510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어, 정치권력에 해당되는 통치권과 군사권은 집정관이 장악하고 종교 권력은 최고 대제사장 Pontifex Maximus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로마법과 로마사회에서 칭했던 최고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으며, 그 뒤 교황 역시 ‘폰티팩스 막시무스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Pontifex Maximus에서 라틴어 pontifex는 pons(다리)와 faciens(facio의 현재분사)의 합성어로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신관’이라고 옮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수용한 것은 단순히 교황의 호칭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 Ecclesia vivet iure romano”라는 말처럼 로마 가톨릭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역편제와 통치체제를 계승하여 교회조직을 교구 개념으로 확립하고, 미사와 전례에서도 로마의 전통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통치와 운영에 있어 로마법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 교회의 직접적 지배는 대략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가치 체계라고 하여도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일한 가치 체계 안에 처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답답함을 느꼈을 테지요. 아니, 그것은 단순한 답답함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지배했던 지난 시대를 ‘중세의 암흑’이라고 묘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서양사 안에서 중세를 상징하는 표제어처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학계에서 중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르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중세’ 하면 떠오르는



팔라조 칸첸레리아

말마디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법이 분리되는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와 법이 분리되는 제2단계는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던 중세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발전시켜 전개한 정당한 가격이나 교환정의 la giustizia commutativa(commutative justice)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s, 1225?-1274의 정의가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는 대출 이자의 금지도 고안했는데, 이는 중세 시대 전체를 거쳐 종교문헌에 정의되기도 했지요.⁹⁾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神學大全 Summa Theologica>

9) Cf. P. Gallo, op. cit., pp. 53~54.



천사들의 성에서 바라본 바티칸

제Ⅱ부 제Ⅱ편 제77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에서 토마스는 기만에 의한 매매와 정당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매매의 불법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이러한 견해는 사법적私法的 효과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는 여기서 정당한 가격을 공권력의 개입이나 독점 등의 왜곡이 없는 시장 가격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당한 가격을 지키는 것이 교환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가격이 한 점에 귀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가운데 토마스는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의 법론에 따르면 신법 또한 인간을 수범자로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 문제입니다. 토마스는 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를 알고 있던 매도인은 사기의 죄책을 지고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매매에 있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로마법의 구별에 따라 명백한 하자과 그렇지 않은 하자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문제는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매매의 합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토마스는 상거래 자체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익의 사용 목적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토마스의 상거래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익의 사용 목적은 토마스의 정의론 중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새겨집니다.

제Ⅱ부 제Ⅱ편 제77문의 의미는 그 자체의 신학대전 내의 위치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전 자체가 토마스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위해 구현된 순서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의 위와 같은 결론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사고의 기초를 이루는 그리스도교의 이념, 활발해진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재생된 로마법의 연구도 바탕으로 하였지요. 통시적으로는 그리스 철학과 구약 성서에서부터 비롯한 정당한 가격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과대한 손해^{laesio enormis}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학설회찬>에 나타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정당한 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때에 관한 규율이었습니디. 로마법의 이러한 논의는 그 후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신학대전>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한 손해^{laesio enormis}가 산술적인 확정을 요구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과는 달리 토마스의 유연한 태도는 일정한 범주 내에 있으면 정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대한 손해^{laesio enormis}와 큰 차이를 가집니다. 정당한 가격론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특히 노동법과 경제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¹⁰⁾

종교와 법이 분리되는 제3단계는 종교와 법의 관계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인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중심이 더 이상 ‘신神’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각의 계기가 되었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주의 사조와 자연법학이 융성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법과 종교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이자, 동시에 세속주의 개념이 태동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했던 원인은 학문적

10) 한승수, 「신학대전 제2부 제2편 77문(매매에 있어서의 사기) 연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i-ii 참조.

연구 대상, 즉 관심의 변화입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중세의 라틴어를 거부하고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기원전 43,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등의 고전 라틴어 연구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키케로의 「법률론(De legibus)」을 읽어보면, 그의 이성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입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의한다면 법은 자연에서 받아들여진 최고의 이성이며, 그것이 무엇을 행하거나 반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그와 같은 이성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확증되고 완전할 때, 법이 된다.”¹¹⁾ 나아가 키케로는 그리스 철학을 넘어 “우리는 최상의 법에서 참다운 법의 원천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며, 어떠한 성문법이나 모든 도시국가에서 제정한 법보다 먼저 태동했다.”¹²⁾ “따라서 어떠한 것도 이성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성)은 인간과 신에게 있는 것이며, 신과 더불어 최초로 인간에게 이성이 결합된다. 그러나 인간과 신 사이에서 이성은, 그들 사이에서도 이성은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 되며, 우리는 법으로 인간들을 신들과 함께 결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¹³⁾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흥과 찬탄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조적인 학문적 풍토에서 벗어나 인문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학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음악, 미술, 건축 등 학문과 예술의 전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끝으로 법과 종교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현재 탐구가 진행 중인 외계 생명체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이 발견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 생명체나 행성 발견은 종전의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창조론에 수정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종교계의 입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이야기와 과학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교리 체계를 옹호하는데 주력할 겁니다.

오히려 변화는 일반 시민 세계에서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공간 인식에 대한 확대는 단순히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우주와 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인간 자신에 대한 존재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테지요. 이렇게 변화된 사고는 또 다른 더 넓고 새로운 세계와의 사고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인간은 법과 종교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려 할 것입니다. 대항해시대 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서구인에게 단순히 지리상 발견으로 그치지 않은 것처럼 외계 생명체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발견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인간 사회만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능한 것이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엄청난 투쟁의 산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사고와 가치관의 노예일 수도 있고, 법학은 그 사고와 가치관이라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종합학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해 봅니다. 법학이란 학문이 그 사고의 실타래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¹⁴⁾

11) Cicero, “De Legibus” Liber I, 18; “Igitur doctissimis uiris proficisci placuit a lege, haud scio an recte, si modo, ut idem definiunt, lex est ratio summa, insita in natura, quae iubet ea quae facienda sunt, prohibetque contraria. Eadem ratio, cum est in hominis mente confirmata et <per>fecta, lex est.”

12) Cicero, “De Legibus” Liber I, 19; “Constituendi uero iuris ab illa summa lege capiamus exordium, quae, saeculis <communis> omnibus, ante nata est quam scripta lex ulla aut quam omnino ciuitas constituta.” 현송중저, 조규창 증보의 「로마법」, 법문사 2004, 220쪽에서 언급하는 키케로의 자연법론을 확인하고자, “De Legibus”와 “De Republica” 전체를 통독해 보았지만, 두 분이 인용했다고 표시한 각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미셀린 이사이의 「세계인권사상사」 67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De legibus”의 원문을 확인하여 번역했음을 밝힌다.

13) Cicero, “De Legibus” Liber I, 23; “Est igitur, quoniam nihil est ratione melius, eaque <est> et in homine et in deo, prima homini cum deo rationis societas. Inter quos autem ratio, inter eosdem etiam recta ratio [et] communis est: quae cum sit lex, lege quoque consociati homines cum dis putandi sumus. Inter quos porro est communio legis, inter eos communio iuris est.”

14) 한동일, <라틴어 수업>, 흐름출판사 2017, 101쪽 참조.